

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- 전문위원 이중갑입니다.

- 2005년 3월 4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고,
3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,
3월 18일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된,
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
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.

- 먼저,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,
 - 학교회계제도의 시행과 관련법규의 개정에 따라 관계규정을 정비하고,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,

-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,
 - 학교회계제도의 시행에 따라 공립의 각급 학교 학교회계 소관 물품을 관리대상에 추가하고(안 제1조),

 - 물품매입 등의 요구에 있어 서무주무자를 업무주무자로 하였으며

(안 제8조, 제9조),

- 중요물품의 범위를 물품당 단가 50만원 이상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물품으로 하고(안 제11조),
- 행정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불용품의 소요조회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.
(안 제16조제4항)

□ 다음으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금번 제출된 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
 - 학교회계제도의 시행(2000. 1. 28)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리대상물품에 학교회계 소관 물품을 추가하는 등 관계규정을 정비하고,
 -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- 다만,
 - “업무주무자”의 명확한 의미,
 - 그리고, 현행 각 기관별 공문발송을 통한 소요조회를 인터넷을 통한 소요조회 방식으로 변경할 경우, 소요조회의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.

- 이상으로 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